

안양시 고시 제2026-85호

고 시

1.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-1번지 일원 “향림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하수도 공사”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안양시 하수과(031-8045-261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5. 6.

안 양 시 장
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성 명: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조합
- 주 소: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79번길, 5층(안양동)

나. 사업 목적

- 향림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하수도 공사

다.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: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-1번지 일원, 면적: 8,497.4㎡

라.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·명칭 및 용량

공 종		규 격	단 위	수 량		비 고
				당 초	변 경	
합류식	하수관로	D1000	m	16.8	32.0	증) 15.2
		D1200	m	8.0	8.0	변경없음
		D1500	m	194.4	174.7	감) 19.7
	맨 홀	900×900(암거)	개소	1	1	변경없음
		1200×1200	개소	1	1	변경없음
		1400×1200	개소	-	2	증) 2
		1500×1500	개소	1	1	변경없음
		1800×1800	개소	7	7	변경없음

마.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

- 삼성천배수구역, 석수처리구역

바.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

- 해당없음

사. 사업시행기간

- (당초)허가일로부터 ~ 2026.05.31.
- (변경)허가일로부터 ~ 2026.12.31.